

서초소방서,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
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기업

PARA

정재우 기자 | 기사입력 2024/04/29 [16:30]

“사람을 살리는 기술”

(주)성화플러스가 앞장섭니다. ⚡ 특허 5개 / 한국일보특허대상



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

신고대상(서초구 관내)

-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
- 운수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
- 숙박시설, 위락시설, 복합건축물

신고 내용

-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지·차단·폐쇄 등
- 복도, 계단, 출입구, 방화문 폐쇄·훼손·장애물 설치 등

신고 방법

- 방문·우편·안전신문고·소방서 홈페이지 등
-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안에 신고

신고 포상(필요 시 심사위원회의 실시 후 지급결정)

-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
-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(소화기, 감지기 등)

“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”에 따른다.



서초소방서

예방과 ☎ 02-6981-5881



[FPN 정재우 기자] = 서초소방서(서장 손병두)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'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'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.

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.

문화·집회시설, 판매·숙박·위락시설,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▲복도, 계단, 방화문 폐쇄·훼손·장애물 설치 행위 ▲소방시설의 폐쇄·차단 행위▲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지 등 소방시설에 가해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.



(주)조양테크